

現代企業의 經營者 支配 趨勢에 關한 研究

林義澤
經營學科

<요 약>

現代企業의 經營者는 法的理念에 따라서 所有者의 利益을 爲하여 經營하는 責務가 있지만 創造에 對한 衝動, 自己集團과 一體化하려는 性向, 他人에 對한 奉仕心 이와같은 非金錢的인 인센티브를 動機로 하여 經營을 하게되고 社會的 利益을 遂行하므로서 利益者 集團과 關聯하여 調整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經營者 支配의 추세에 즈음하여 社會·經濟的인 正當性의 根據을 明確히 確立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Study on : the Manager - Governing Trend in the Modern Business

Lim ley Tack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bstract>

The modern business manager has the duty to manage according to the legal ideology for the profit of the owner, but at the same time he must manage his business and work for the social interests with the motivation of the nonprofitable 'incentives' such as impetus for creation, inclination to identify himself with his group, and service to others,

and also he must control his role in relation to the interest group. That is the way he can establish socio-economic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manager-governing legitimacy.

I. 序 論

지난해 삼성그룹의 起亞株式 買入事件以後 企業買受合併(M&A)의 活性化와 惡意的 買受에 對備 經營權 방어용 相互出資는 認定되어야 한다는 指摘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政府에서는 所有分散 優良業體의 相互出資許容은 오너企業의 틀을 벗어난 企業이 또다시 特定財閥에게 買受 當하는 것을 막아서 經營權安定的 制度的 틀을 만들고 相互出資禁止가 當場 解體되는 것은 아니지만 財閥當 40~50個에 達하는 系列社中 1~2個의 所有分散 優良企業을 爲해 相互出資를 許容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全系列社中 所有分散 優良業體가 절반程度되어야 相互出資禁止를 풀 수 있고 現在 30大 財閥의 總系列社數는 600개를 넘고 있다. 이중 所有分散 優良 系列社는 8個會社에 不遇하다.(別表) 最近 改正된 公正去來法에서 所有分散優良業體는 出資限度 制限을 유예하고 오-니持分이 낮은 財閥은 大規模 企業集團 指定에서 除外시킴으로서 所有分散은 具體的으로 系列社 整理 오너의 持分 賣却없이는 不可能하다 所有 分散을 통한 經濟力 集中완화 이것이 新財閥政策의 骨幹인 所有分散의 積極 유도이며 株式所有의 高度의 分散으로 最高經營者에 依한 經營政策에 비추어 經營者 支配의 趨勢에 나아가고 있다.

(別表) 소유분산 우량기업

그 룹 명	대 우	L G	기 타
계 열 사	대 우 통 신 대 우 전 자 오 리 온 전기	L G 상 사 L G 전 선	금 호 건 설 삼 성 물 산 해 태 전 자
계	3개사	2개사	3개사

(別表) 30대그룹 동일인·특수관계인 지분율

(단위 : %, 94년4월1일기준)

그 룹 명	지 분 율	그 룹 명	지 분 율
현 대	16.8	한 일	14.5
대 우	6.5	한 라	32.4
삼 성	3.9	동 국	13.9
L G	5.4	삼 미	14.6
선 경	16.6	동 양	6.4
한 진	21.7	코 오 룡	8.4
쌍 용	4.8	진 로	10.8
기 아	0.2	고 합	4.4
한 화	5.5	우 성	20.0
롯데	3.3	동 부	14.9
금 호	2.4	해 태	5.0
대 림	8.8	극 동	5.7
두 산	15.8	한 보	51.3
동 아	23.4	미 원	16.3
효 성	14.5	벽 산	15.9

자료 : 한국경제신문 1995. 1. 20

바-리와 민즈(A.A. Berle and G.C.Meaus)는 著書 “The Morde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北道忠男譯 『近代株式會社와 私有財産』 文雅堂銀行研究所 1958年)에서 1927年 現在와 美國巨大企業 200社의 支配形態를 調査·分析하고 그 中에서 44%가 經營者 支配企業이고 이와같은 趨勢는 今後에도 急速히 增大할 것이라고 豫言하고 있다. 고-돈(R.A Gordon)은 著書 “Business Leadership in the Large Corporation 1945” 平井泰大郎 譯 「비즈니스, 리-다 쉽, 東洋經濟新報社 1954年)에서 經營者 支配企業은 33%라고 하여 前記 바-리와 민즈 보다 10%정도 劣勢임을 지적했다. 리-더(R.J Lerner)는 著書 “Mana Gement Control and the Large Corporation, 1970” 「經營者支配와 大企業」에서 株式分散에 따른 企業의 支配形態의 確定이라고 하는 바-리. 민즈의 手法을 그대로 踏襲하여 1963年 現在 經營者 支配企業은 80.5%에 達하여 企業支配에 關한 「經營者 革命」은 이미 完了되었다고 한다.

最近에 바-리와 민즈와 같이 여러 調査分析¹⁾과 또한 三戶 浩의 調査 分析²⁾에서도 經營者 支配企業이 壓倒的 優位로 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바-리 민즈의 企業支配의 分析手法은 古典的인 것이고 企業支配를 論하는 사람은 모두 여기에서 論議를 하게 된다.

1) 三戶·正木·晴山 「大企業 における所有と 支配」 未來社 1973年.

2) 三戶 浩 「日本大企業にすける 支配構造」 文眞堂 1983年.

獨逸에 있어서도 例外가 없고 푸로스(H. Pross) 가시아(S. Cassier) 도네-드 뎀스겐(P. J. Phonet and O. H. Poensgen)等 調査分析을 批判하는 슈타이만과 슈라이그(H. Steinmann and G. Schreyögg)等은 基本的으로 그러하다. 全體的으로 보게되면 獨逸의 경우에는 美國이나 다른 先進國에 比하여 經營者 支配가 優勢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大企業으로서 어느 範圍까지 考慮할 것인가의 問題와 關連될 것이다. 결국 資本金, 賣上高, 從業員數 等を 勘案하여 大企業으로서 간주하고, 또 支配形態와 關連해서 株式分散의 基準을 어디에 設定하는가에 따라서 經營者 支配 企業의 比率는 微妙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바-리, 민즈에 比해서 고-돈의 經營者 支配의 劣勢의 한가지는 여기에 起因한다고 하겠다.

獨逸의 大企業에 있어서의 經營者 支配는 美國이나 다른 先進國에 比해서 劣勢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다만 一般的인 動向일 뿐이고, 將來는 점차 增大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겠다.

現代의 大企業은 社會的 生活의 여러 側面에서 一般大衆에게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어 社會의 存廢에도 大企業의 動向에 따라 相關의 關係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當然하게 여겨지는 것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부과하게 되고 社會的 責任의 遂行을 이행할 수 없는 現代의 大企業은 「大象株式會社(株式分散型會社)」(die Publikumsaktiengesellschaft) · 「準公的企業」(die soziale Institution)가 되고 여기에서는 所有者를 代身하여 支配者가 된 經營者가 支配力을 行使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權限의 正當性은 從來의 古典的인 「所有權理論」으로서는 이제는 說明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權限의 正當性的 根據가 새로운 問題로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美國에서도 若干의 言及이 있었지만 本格的인 論議는 없었다고 한다. 여기까지에서 一般的 結論으로서는 이와같은 現代企業의 特質로서는 當然히 企業을 둘러싼 利益關係者の 「利益調整」 機能에 正當性的 根據를 찾게 될 것 같다.

이와같은 見解는 古典的인 것이지만 現在로서는 意義가 있다고 生覺된다.

「所有者支配」이거나 「經營者支配」이거나 그 自體로서는 重要한 問題가 되지않으나 그것이 問題가 되는 것은 支配形態의 變化에 따라 企業이 社會生活에 걸쳐서 미치는 많은 影響에 對하여 生覺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支配者로서 所有者와 經營者가 그 支配權限을 行使함에 따라서 그 基盤의 變化가 問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經營者 支配가 一般的 事實로 되어 있음에도 所有者와 같이 法的權限이 經營者가 뒷에 依據하여 支配權限을 行使하게되며 우리는 이것이 무슨 根據로 受容되고 있는가의 問題와 所有主이면서 自己의 富에 對한 支配權의 遮斷되어 있는 「群小株主」의 利益을 어떻게 制度的으로 確保할 것인가의 問題가 獨逸에서도 論議되고 있다. 後者에 對한 代表的인 論者는 에이레(E. Jehle)³⁾이다.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이 企業을 둘러싸고 있는 利益集團의 「利益調整」에 있다고 하면 利益者 集團은 그 權限行使를 納得的으로 受容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 受容의

3) E. Jöhle Retormvorschläge Zurverstärkung der eigentümerbezogenen Management-Kontrolle in publikumsgesellschaften. ZfbF 34Jg 1982 ss 1065-1084

根源은 究極的으로 利益者 集團의 「參加的(共同決定的 意思決定)」이라고 生覺된다.

따라서 이러한 思考에 依하면 企業에서 이러한 「參加的 意思決定」을 制度로서 導入하는 것이 必要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런대도 여기에 따르는 것이 獨逸의 「共同決定法」인 것이다. 共同決定法에 따른 監査役會制度는 形式的으로는 이와같은 役割의 一端을 맡고 있다고 期待하고 있다. 監査役會가 共同決定的 業務를 얼마나 實行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經營參加(共同決定)의 重要한 指標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所有者 支配企業과 經營者支配企業에서 共同決定的 業務의 實施에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經營者支配企業에서는 所有者支配企業이나 有限會社(所有者支配와 經營者支配의 兩者를 포함) 보다는 共同決定的 業務가 壓倒的으로 많이 實行되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點에서 經營者 支配의 正當性이 어느 程度 根據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共同決定法에는 때로는 問題가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를테면 監査役會의 構成, 組織選出方法, 合意的 意思決定의 方法等에 關해서 問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利益調整」에 關한 意思決定은 嚴格히 말해서 現狀批判적이고 未來志向的인 規範設定이지만 監査役會의 合議에서는 「理解의 方法」보다 「理性的 對話」가 要請되게 된다.

여기서 「슈타이만」과 「슈라이그」등의 調査나 論文을 中心으로 한 獨逸大企業의 所有와 支配의 現狀을 分析함으로써 經營者 支配의 優位性을 言及하게 되고 또한 不可避的으로 派生하는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으로 生覺되는 「利益調整」機能을 「理性的 對話」(構成主義 哲學·科學理論)에 따라 方法論的 根據에 따르고자 한다.

1. 支配概念과 支配範疇

企業의 支配狀況을 調査·分析함에 앞서 첫째로 「支配」라고 하는 말의 概念規定이 前提가 된다. 「支配」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意味가 있다.

- ① 業務를 配分·指揮·處理하고 사람을 統制하는 것 自由로이 管理·統制할 수 있는 것
- ② 統治하는 것 어떤 사람의 意思가 相對者의 行爲를 規制하여 얹어냄.
- ③ 한사람의 意思決定이 타인의 思考나 行爲를 規制하고 拘束하는 것.

多少의 無理가 따르지만 ①에는 Verfügungsgewalt ② Herrschaft, ③ Kontrolle라고 하는 獨逸語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 統治한다는 것은(Herrschaft) 다분히 政治的인 意味로 사용되므로 「企業支配」라고 하는 意味는 주로 “Verfügungsgewalt” 또는 “Kontrolle”라는 言語로 사용되지만 “Verfügungsgewalt”는 넓은 意味에서 “Kontrolle”를 포함한다고 본다. 이와같은 두가지의 意味는 嚴密하게 區別하여 사용해야한다고 生覺된다.

여기에서는 다만 “支配”라는 語意에 따르면 (1)의 「業務의 支配 配分·指揮·處理·統制」는 (3)의 「한사람의 意思決定이 다른 사람의 思考나 行爲를 規制하고 拘束하는 것」에 基盤을 두고, 여기서 派生된다고 生覺되므로 (3)의 「意思決定」을 누가 主管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企業支配의 形態를 알 수가 있다.

슈타이만과 슈라이그 등에 의하면⁴⁾ 支配(Kontrolle)란 「企業政策의 特性을 決定하는 可能性」, 「企業政策의 意思決定에 對한 影響可能性」, 「企業政策을 直·間接的으로 (支配 期間을 通해서) 決定하는 可能性」인 것이다. 이것은 고-돈과 같이 究極的 支配를 「意思決定」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여기서 슈타이만과 슈라이그는 1972年과 1979年의 두번에 걸쳐서 獨逸에서의 大企業의 支配狀況의 調査, 分析을 했는데 그 基準이 되는 「支配範疇」은 第1表와 같다.⁵⁾

(別表1) 支配狀況의 分類基準

支配範疇	操作方法	內 容	統合된 支配範疇
I. 完全所有支配	$X \geq 75$	私人이나 法人이 企業의 重要議決을 支配할 수 있는 多數의 自己資本을 所有하고, 적어도 75%以上 阻企可能 小數波가 없을 것	所有者支配
II. 多數所有者支配	$50 < X < 75$ $24 < X \leq 50$ 나머지는 全體分散	企業을 支配할 많은 基本資本을 所有하고 大體로 50% 조금 넘게 바-리와 민즈는 $50\% < X < 80\%$ 푸로스는 $25\% < X < 50\%$ 나머지 分散시킴	
III. 少數所有者支配	$\sum \times i > 50$ $25 < \sum \times i \leq 50$ 前提로서 나머지 全體分散 共同行動하는 少數者가 많지 않을 것	若干의 少數者의 資本持分 合計가 50%以上 必要할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分散일때 全體 25% 若干 上 回할 程度가 좋다. 基準이 明確치 않지만 個個의 事例로서 判斷해야 한다.	
完 全	$\times_i \leq 1$ 모든 i에 對하여	株式의 高度分散 10% 以上 所有 株主없음	經營者支配
IV. 經營者支配 條件附	$\sum \times i \leq 25$ 나머지 全體分散 $\sum \times i > 25$ 여기 前提는 III의 條件에 合致 않을 것	어느 程度 株式을 所有하고 있지만 共同으로 阻止 少數派를 形成하는 것은 되지 않음. 協同組合도 資本을 分散所有 이 점에서 바-리 민즈와 差異	

注: \times_i 는 基本資本내지는 基礎資本의 (i에 따른) 持分

(資料) 別表 1, 2, 3, 4 獨逸 大企業의 經營者支配. 『橫浜大經營學部資料研究室』(1984年)

4) G. Shreyogg und H. Steinmann: Zur 'Trennung' Von Eigentum und Verfügungsgewalt. Eine empirische Analyse der Beteiligungsverhältniss in Deutschen Großunternehmen, ZfB 51. Jg, 1981(以下. Aufsatzl とする) S435H. Steinmann G Schreyogg und C. Puthorn: Managerkontrolle in deutschen Großunternehmen-1972 und 1979 im Vergleich 西獨 大企業, における 經營者支配 1972年과 1979年의 比較研究(橫浜大 經營學部研究 資料室) 1984年.

5) 前掲書 pp. 540-541

II. 大企業의 支配狀況

슈타이만 등은 前記와 같은 支配範疇에 따른 大企業 300社의 分析에 依하여 1972年 調查對象이 된 最大 300社의 賣上高를 基準으로 한 1973年의 Capital誌의 選出을 보면 工業 230社, 서비스業 20社, 商業 50社가 포함되고, 貸借對照表 總額을 基準으로 銀行 25社 保險 25社가 追加的으로 分析 對象이 되었다. 1979年度에 賣上高라는 選擇基準에는 附加價値가 業種에 따라 變動이 되어 問題가 되지만 이를 是正키 爲하여 從業員數 貸借對照表 總額을 考慮하여 最大 300社가 選出되었다. 바-리 민즈의 周知의 分析手法에 따라서 「窮極의 支配」를 가지고 最終的인 支配形態를 確定한다 먼저 「第一段階」에서는 前記 基準에 「株式分散」의 程度에 따른 當該企業의 支配形態의 分析이다.

「第二段階」는 當該企業의 다른 企業(子會社포함)에 對한 支配·被支配關係의 分析에 依한 再分類이다.

第一段階와 第二段階의 分類上의 關係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例를 하면 經營者支配이다. 「大衆株式會社(株式分散型會社)」 A와 B가 有限會社 C의 基本株式의 50%를 所有하면 그 有限會社는 第一段階에는 所有者支配, 第二段階에서는 經營者支配로 分類된다.

그 結果, 所有者企業은 I, II, III의 支配範疇에 屬하는 全企業이 포함된다. 經營者支配企業에는 (1) 第一段階에서 經營者 支配에 屬하는 全企業, (2) 支配 範疇 I, II에 屬하면서 最終的으로 大衆株式會社, 協同組合, 公企業이라고 하는 企業에 支配되는 企業. (3) 多數者 所有企業과 少數者所有企業이 窮極的으로 經營者 支配企業과 證明된 企業을 포함하게 된다

大規模인 協同組合, 勞動組合 企業, 公企業 및 相互保險團體는 1970年度에도 1972年과 같이 經營者支配 企業으로 分類되고, 同族財團은 所有支配, 公益財團은 經營者 支配로 分類되는 것이다.⁶⁾

또 外國企業은 프랑그후르드의 證券取引所에서 알고 있는한 經營者 支配로 生覺되고 그렇게 分類가 된다⁷⁾

따라서 이와같은 「所有者支配」나 「經營者支配」가 여하튼 重層的, 總合的 意味에 있어서 生覺하게 되고 機關所有支配 企業은 第一段階에서 所有者 支配에 屬한다고 分類되고 第二段階에서 經營者 支配로 分類하게 된다. 資本의 結合·依存關係를 充分히 考慮하고, 當該企業의 支配關係를 分析할 뿐만 아니라, 그 企業을 支配하고 있는 企業의 支配狀況을 調査·分析하여 從屬企業의 支配狀況을 確定하는 手法을 取하게 된다.⁸⁾

1972年度와 1979年度의 最大 300社의 第1段階와 第2段階에서 支配狀況을 綜合해 보면 第2表와 같다.⁹⁾

6) 前掲書 p. 608.

7) 前掲書 p. 542.

8) 前掲書 p. 538.

9) 前掲書 p. 545.

1972年度の 最大 300社の 支配狀況을 보게 되면 第1段階에서는 所有者 支配企業이 269社로서 90% 經營者支配 企業이 31社에 10%이지만, 第2段階에서는 所有者支配企業이 149社로서 50% 經營者支配 企業이 151社로 50%(銀行 25社 全部가 經營者 支配, 保險 25社의 76%가 經營者 支配였다. 결국 最大 350社 가운데 195社의 65%가 經營者 支配로 되어서 經營者 支配의 比率이 增大한다)로 되어 所有者 支配企業 가운데 120社가 經營者 支配로 移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賣上高를 보면 所有者 支配企業의 合計는 1,800億 마르크로서 35%이지만 經營者 支配企業의 合計는 3,280億 마르크로서 65%를 占하게 된다.

1979年度에 있어서, 第2段階에서는 所有者支配 企業은 128社로서 43%, 經營者支配 企業은 128社로서 43% 經營者支配 企業은 173社로서 57%(銀行 25社 가운데 24社의 96%가 經營者 支配이고 保險 25社 가운데 22社의 88%가 經營者支配로서 結果的으로 最大 350社 가운데 132社의 38%가 所有者支配 218社의 62%가 經營者支配로 되어 經營者支配의 比率이 增大한다.¹⁰⁾

(別表 2) 最大 300社の 支配形態의 比較(1972~1979年度)

年度 段階 企業數·賣上高 支配範疇	1972年								1979年							
	第一 段階				第二 段階				第一 段階				第二 段階			
	企業數	比率	賣上高	比率	企業數	比率	賣上高	比率	企業數	比率	企業數	比率	賣上高	比率		
I 完全所有者支配	159	53	189	37	108 [51](15)	36			159	53	85 [74](22)	28	74	22		
II 多數所有者支配	63	21	95	19	28 [35](16)	10			54	18	26 [28](10)	9	28	10		
III 少數所有者支配	47	16	97	19	13 [34](8)	4			56	19	17 [39](8)	6	39	8		
所有者支配計	269	90	381	75	149 [120](8)	50	180	35	269	90	128 [141](40)	43	141	40		
IV 經營者支配	31	10	126	25	151	50	328 (80)	65 (16)	31	10	173 (40)	57	723 (192)	73		
合計	300	100	507	100	300	100	508	300	100	300	100	994	100			

注 : ()는 公企業 []는 經營者支配에 移行한 企業을 表示

賣上高의 單位는 10億 마르크

(資料) 橫濱大學 經營學部 資料研究室(1984年)

10) 銀行 및 保險의 最大25社의 經營者 支配의 比率

1972年 銀行 58 保險 0, 1979년 銀行 56 保險 0

(別表 3) 1979年度의 工業最大 100社의 支配狀況과 賣上高 比較(%)

年度 企業數·賣上高 支配狀況	1972年		1979年		最大 300社와의 比較	
	企業數	賣上高	企業數	賣上高	企業數	賣上高
所有者支配	36	29	34	20	43	27
經營者支配	64(14)	71(18)	66(16)	80(23)	57(13)	73(19)
合計	100	100	100	100	100	100

注：()는 公企業 (資料) 橫濱大學 經營學部 資料 研究室 (1984年)

(別表 4) 1972年度와 1979年度 工業 서비스業 및 商業의 支配와 賣上高 比率 (%)

年度 支配狀況 企業數·賣上高 部門	1972年				1979年					
	所有者支配		經營者支配		所有者支配		經營者支配		貸借對照 表總額	從業員
	企業數	賣上高	企業數	賣上高	企業數	賣上高	企業數	賣上高		
工業	53	34	47	67	43	25	57	75	78	71
서비스業	25	20	75	80	10	8	90	92	99	81
商業	44	43	56	58	40	38	60	62	58	62

다음으로 工業, 서비스業 商業의 支配狀況과 賣上高와의 關係를 보면¹¹⁾ (第 3表)와 같다.

前記表에 依하면 1972年度에는 工業最大 230社中 所有者支配가 53%, 經營者支配가 47%로 되고있다.

賣上高를 보면 所有者支配가 34%에 對하여 經營者支配는 67%로 約2배가 되고 있다. 1979年度에는 所有者支配는 43% 經營者支配가 57%로 되어 점차 經營者支配로 移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賣上高는 所有者支配의 25%에 對해서 經營者支配는 75%로서 三倍增大하고 工業의 1位부터 100位の 100社와 101社부터 230位까지의 130社를 1972年과 1979年의 兩쪽을 比較하면 規模가 擴大함에 따라 企業數나 賣上高에 있어서 壓倒的으로 經營者支配 企業의 比率이 높게 된다.¹²⁾ (第4表)에서 이것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11) 前掲書 p. 547

12) 前掲書 p. 54.

(別表 5) 1979年度의 各部門 賣上高 (%)

部門	支配狀況	支配狀況		
		所有者支配	經營者支配	經營者支配 의 公企業
1. 出版	版	100	-	
2. 纖維	維	93	7	
3. 機械製造	製	65	35	(1)
4. 食品	品	65	45	
5. 鐵鋼	鋼	49	51	(10)
6. 自動車	車	36	64	(36)
7. 化學	學	20	80	(7)
8. 金屬	屬	27	73	(21)
9. 建築	築	35	65	(14)
10. 電氣	氣	22	78	
11. 食品	品	18	82	
12. 保險	險	⊕	⊕	
13. 銀行	行	1	99	(60)
14. 銀行	行	⊕	⊕	

注, ⊕表 調查不能

(別表 6) 工業最大 230社 部門別 賣上高 (1979年)

番 號	部 門	企 業 數	部門別賣上高 比 率 (%)
10	에 너 지	9	39
21	鑛業	5	85
22	鑛油	12	89
25	土石	5	12
52	精密磁器	4	31
30	鐵鑛生產加工	15	74
28	非鐵金屬	11	78
35	機械製造	27	37
33	輸送機關	12	78
37	電子技術	26	66
39	金屬製品	5	9
40	化學工業	33	94
50	社務機械	6	64
55	製紙	2	16
57	出版	5	41
59	고무·플라스티크	5	22
63	皮革·纖維	5	8
69	食品	28	31
70	建築	15	50

(資料) 橫濱大學 經營學部 資料研究室(1984年)

(別表 7) 1972, 1979년에 발췌된 部門의 企業數와 所有者支配

部 門	所 有 者 支 配		企 業 數	
	1972(%)	1979(%)	1972	1979
出 版	100	100	5	5
織 維	87	50	15	4
運 送 機 關 및 關 聯 部 門	75	67	8	12
機 械 製 造	63	63	32	27
食 品	61	46	23	28
化 學	59	52	29	33
鐵 鋼	50	47	16	15
金 屬	44	36	9	11
建 築	43	55	21	20
電 子	37	38	19	32
에 너 지	4	8	24	26

工業의 서비스業 및 商業의 全部門에 걸쳐 分析해 보면 支配狀況은 規模와 關連해서 變化한다고 하고 바로 企業規模 增大에 따라 經營者 支配의 比率이 增大한다고 한다. 特히 所有와 支配의 分離는 巨大한 技術에 따라 特徵되어지는 部門(例를 들면 電氣, 金屬, 鐵鋼, 化學이라고 하는 部門)에 있어서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¹³⁾ 이와 關連해서 各産業部門의 支配狀況과 賣上高의 比率을 例示하면 第5表,¹⁴⁾ 第6表,¹⁵⁾ 第7表¹⁶⁾와 같다.

1. 企業支配에 따른 諸問題

슈라이만과 슈라이크 등은 이러한 觀點에서 經營者支配의 優位를 主張하지만 이러한 主張에 對해서는 從前부터 異論있었다. 푸로스는 바-리·민즈와 라-나의 方法에 따라 1958年 現在의 最大100社의 支配狀況을 調査했다. 여기서 經營者支配社는 110社가운데 22社(20%)로서 國家가 大株主인 企業임을 포함해도 40% 程度이므로 獨逸에서는 經營者支配는 劣勢일 뿐 아니라 美國과는 같은 傾向이 아니라고 主張한다.

그들은 經營者支配 企業은 支配의 이 아니고 經濟的 社會的으로 重要的 役割을 맡아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으므로 所有와 經營支配의 分離는 將來 점차로 進行할 것이라고 豫言하고 있는 것이다.¹⁷⁾

13) 前掲書 p 547

14) 前掲書 p. 549

15) 前掲書 p.p 11~16.

16) 11, 17

17) 「多數所有者에 依한 支配」가운데 적어도 大株主로서의 國家機關 「大株主로서의 外國企業, 大株主로서의 獨逸企業을 經營者支配로 算入하면 經營者支配는 66社의 60%가 되고, 또 「若干의 少數者에 依한 支配」도 第二段階에 걸친 「窮極의 支配」를 考慮하면 經營者支配의 比率은 上昇하게 된다

經營者支配 企業이 점차 적어지고 그 減少傾向은 1961년부터 1970年の 10年間 增大하고 있다. 그들은 25%以下の 株式所有를 經營者支配의 基準으로 1970年 現在의 上場企業 297社 가운데 經營者支配가 15社, 47社는 所有者支配 나머지 235社는 어디도 屬하지 않는다고 分類하고 있다.

슈타이만과 슈라이그에 依하면 그들의 調査分析의 問題點은 ① 235社를 考察의 對象에서 除外한 것 ② 上場企業의 對象으로서 有限會社 等の 다른 法形態를 한 企業을 對象으로 한 것 ③ 企業의 依存關係를 考慮하지 않는 것(資本의 結合關係等) 결국 「第一段階」의 調査分析을 끝내게 되므로 問題가 있다고 보고 以上の 여러點을 考慮해서 自體의 支配狀況을 確認하는 「第二段階」의 考察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¹⁸⁾

「第二段階」의 調査·分析이 行하여지면 「어디도 屬하지 않는」다고 分類된 235社 가운데 相當한 企業이 經營者支配로 移行된다고 生覺된다. 여기까지의 考察에서 다음과 같은 指摘을 할 수가 있다.

- ① 獨逸의 大企業에서 所有와 支配의 分離는 明確한 事實로 되고 完全하다고는 못해도 壓倒的 優位를 占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푸로스의 豫言은 合當하다.
- ② 도네-드·벤스켄의 指摘은 事實에 反한다.
- ③ 經營者支配 企業은 相對的으로 賣上高를 높이고 大企業 300社 가운데 半以上을 占하고 있다.
- ④ 企業規模가 커짐에 따라 經營者支配 企業은 增大한다.
- ⑤ 高度로 巨大한 技術을 必要로 하는 企業은 經營者支配이다.
- ⑥ 傳統的으로 中位에 있는 企業은 一般的으로 所有者 支配이다.

以上과 같이 美國이나 日本과 같이 獨逸에서도 經營者支配의 優位가 立證되고 있지만 그 傳統的 立場에 對해서 도네-드, 벤스켄과 다른 觀點에서 反論이 있다. 이를테면 리-다·아-브(Ridder-Aab)는 「所有權理論」의 立場에서 痛烈한 批判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¹⁹⁾

이 理論은 所有와 支配의 「分離」는 所有權의 問題를 生覺케하는 絶好의 機會를 提供하고 있다. 現在의 經濟體制에서도 依然하게 株主의 所有權이 바-리·민즈의 慧眼을 追從하는 者도 있지만 結果的으로 適切한 支配機構가 있음을 證明하고 있다. 바-리·민즈가 말하는 株式의 高度分散은 少數所有者 支配로 되어 有利한 現象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意味가 있는 것일까.

이와같은 反論은 三戶公教授가 말한바 같이²⁰⁾ 經營者支配論에 對한 小數所有者 支配論을 主張하는 根據가 되는 것이다.

獨逸의 경우에도 「群小株主의 無關心과 그들 債權者에 轉落을 契機로, 少數大株主는 直接的 間接的으로 相互 連結이 닿아 銀行이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支配力을 行使하고, 때로는

18) 前掲書 p. 538

19) C-M Ridder-Aab. Die moderne Akihengellschaftum Lichte der Theorie der Eigentumsrechte, 1980, S. 135.

20) 三戶公 「アメリカ 經營思想批判」 未來社 1973年 p. 39.

親한 사람을 仲介하여 支配力을 行使한다.]

이와같은 것은 -時流行한 페다-슨과 나브(L.L. Perderson and W.K. Tabb)의 論據가 다시 主張되는 것이다. 이러한 批判은 바-리, 민즈의 見解를 曲解하는 것이고 바-리, 민즈의 「小數所有者 支配」를 다시 主張하는 것에 不適當한 것이다.²¹⁾

經營者 支配論에 對한 所有權論者로부터의 批判에는 한가지 見解가 있다. 所有와 支配의 「分離現象」은 株主가 一連의 所有權 가운데 資源에 關한 支配의 部分的 權利를 個人契約에 따라 最高首腦 經營者에게 委讓하고 있다.²²⁾ 이러한 見解는 「思考」上 必然的인 個個의 株主에 委讓한 支配權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非現實的인 前揭가 있다고 한다.

現在로서는 個人的 利益을 넘어서 社會的 制度·準公的 制度로 되어 있는 大衆株式會社에 시는 이것을 構造上 不可能하고 또 個人의 株式을 賣却해서 個人的 契約을 解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株主의 構成에 變化가 있는 것이고 虛構의 契約이란 內容에 對한 아무런 變化도 없는 것이나 또 大企業은 그 社會的 影響으로 부터 存續이 要求되고 株主總會의 決定에 依한 企業이 解散되는 것도 實在的인 問題로서는 不可能하므로, 實質的으로는 아무런 變化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²³⁾

그리하면 所有者의 利益이나 意向이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를 保護하는 方法으로서 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 銀行의 「決定權 信託」이 있다. 이러한 法的制度는 立法者의 意圖에 따라서 株式會社의 意思形成過程에서 所有者의 命令을 遂行하는 것 보다 銀行의 自己利益을 追求하기 爲하여 寄與해 왔다는 것은 銀行에 對한 株主의 法的地位가 變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⁴⁾ 이러한 問題에 對한 法的인 改善과 整備를 提唱한 것이 에이-레이다

② 다음으로 「監査役會」의 役割이다. 監査役會는 所有와 支配의 對立·乖離에 架橋를 놓는 思考方式이 되겠다.

監査役會는 企業의 管理에 있어서 所有者의 利益을 代表하고 有利하게 管理한다는 前提가 있다. 監査役會가 반드시 所有者를 代表하게끔 組織化 되지 않고 監査役會의 選任은 寄託議決權이나 銀行의 援助이고 會社首腦에 依해서 行해진다. 그들의 判斷과 業務關係의 利益이 優先되고 所有者 優先의 觀點에서 行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共同決定權法」에 豫定되어 있는 法的措置가 充分한지도 未定이므로 所有者의 利益이 實現될지는 모르지만, 「共同決定」의 法的措置가 어떤 範圍까지 實施되고 여기 關連하여 監査役會가 어떤 役割을 다할지는 企業의 支配形態에 따라 調査·分析할 必要가 있다.

③ 群小株主는 株式의 賣却(「退去」, exit. Abwanderung)에 따라 自己의 利益을 지키기 爲

21) 財産權 論者의 批判은 三號公教授가 經營者 支配를 否定하는 論據의 한가지는 巨大株主에서 總株式數에 對한 特殊比率는 減少하지만 絶對額은 逆으로 增加한다. 巨大株主가 經營의 支配에 關心을 갖는 것은 當然하지만 한편 經營 支配에 意欲이 없고 議決權 行使에 關心이 없는 群小株主가 存在하므로 大株主의 經營者 支配는 現實化 三號公 アメリカ經營思想批判 前揭, p. 39.

22) 前掲書, pp 11~19

23) 前掲書, p. 20

24) 前掲書, p. 534.

한 意見(「異論」, Voices Widerspritch)을 反映코지 한다. 여기 對하여 하-슈만(A.O.H. Hirshchman)²⁵⁾ 이 詳細하게 말한 바 있지만 株式의 賣却에 따라서도 事態가 本質的으로 變化하지 않으며 現代의 社會的 制度, 準公的 制度로서 企業을 古典的인 資本主義 企業으로 逆行하게 하는 것은 構造上 不可能하다고 한다면 所有者의 意見을 基礎로 한 企業體制的 改善 方法을 摸索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生覺된다. 以上の 問題의 根底에 담겨있는 根本的 問題는 經營者 支配에 依한 從來의 經濟·社會體系가 變化하고 있으나 하는 問題이다 現在의 會社法의 基礎的 論理는 所有者에 依한 資本危險·支配權限 및 利潤要求의 統一(責任과 支配의 統一)이라고 하는 古典的인 經濟自由主義的인 原則이 있다. 하지만 所有와 支配의 「分離」 現象은 그 原則에 逆行하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制度 準公的인 制度로서의 大企業의 實際의 支配狀況을 보면 現在로서는 支配管理權限과 生存手段의 私的所有를 基礎로 展開되는 古典的 命題를 根據基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私的所有制度」의 正當성의 問題가 된다. 所有者가 恣意的 地位에 다른 經營者의 權限의 正當성에 問題가 되고 經營者는 所有者와 同一한 資本危險支配權, 利潤要求의 統一의 原則에 따르지 못하고 所有者와 같은 根據에 세워진 正當성을 갖지 않았다는 見解가 主張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根據에서 經營者의 支配權限이 正當化되는 것일까. 그 中 매우 有力한 根據는 大企業의 現實體를 根據로 所有者와 함께 企業을 둘러싼 다른 利益集團(從業員·消費者·債權者)의 利益을 均衡的으로 考慮할 만한 支配者로서 經營者의 具體的인 行動規範을 確立하는 것이라고 한다. 同一한 觀點에서 바-리 민즈가 經營者는 「會社法人全體의 受託者임과 同一하게 여기에 關한 여러 個個人의 受託者이다。」라고 生覺된다.²⁶⁾

이러한 見解는 企業내지 經營者의 모든 「社會的 責任」과의 關連이 있다고 하는 古典的 見解이다. 逆說的으로 이것만이 經營者 權限의 「正當성의 潛在的 危機의 발로이다.»²⁷⁾ 따라서 經營者의 行動規範의 強調시간으로는 正當성과 企業制度의 새로운 形態의 問題를 解釋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對하여는 바-리와 민즈도 같은 生覺을 갖고 있는 것이다.²⁸⁾ 信賴할 만한 經營者의 制度的 支配가 希望的인 問題 뿐만으로는 信託의 前提(Vertrauensvorshuss)²⁹⁾로서 企業制度가 分명한 問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성의 根據를 갖으려면 어떤 方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企業은 各種利益集團으로 構成되어 經營者가 支配者로 되고 있는 하나의 社會的 制度·準公的 制度라고 하는 事實과는 關係없이 企業은 단지 「所有者가 利益極大化를 志向하고 相互에 有利한 雙務契約을 基礎로 하여 여러 經營活動을 遂行하는 個個人의 集合體」라고 生覺되는 것이다.

制度概念과 企業制度의 特質을 前提로 한 問題解決의 方法을 찾아야 하고 企業의 利益關係者가 法的論理로서 雙務契約, 個人的 交換契約이라고 하는 形式에 立脚하고 있지만 企業의 現

25) 三浦隆一 「組織社會의 論理 構造」, ミネルウア書房 1974年.

26) 前掲書, p. 49

27) 鈴木辰治, 「企業における政治的 要素」 經濟論集(新潟大學) 第40號 1986年.

28) A A Berle and G.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p. 282

29) 前掲書, p. 553

實態를 前提로한 實質的인 雙務契約 個人的 交換契約이라고 하는 形式을 有效하게 하는 方法을 追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雙務契約, 個人的 交換契約에 實質的인 意味을 부여하려면 經營者의 行動規範이 制度的으로 確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行動規範을 確立하는 基礎的인 方法으로는 「超主觀的 超個人的인 共通의 對話」, 「理性的 對話」인 것이다. 이와같은 科程으로 確立된 行動規範은 拘束力을 갖게 되는 것이다³⁰⁾

여기서 經營者는 行動規範에 따른 實踐의 行爲를 하므로서, 雙務契約이나 個人的 交換契約에 利益調整的 統合的인 實質的 意味을 부여할 수가 있다.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은 以上과 같은 科程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獨逸의 「共同決定法」의 理論의 側面에서도 이것을 目標로 하고 있어 이러한 點에서 共同決定法의 本뜻을 어떻게 具體化하여 實行하고 있는지 經營者 支配의 正當性의 一端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III. 經營者 支配의 正當性

經營者 支配에 關한 論議에 對해서 現代의 大企業은 一般的인 株式이라는 私有財産의 所有를 밑받침으로 한 經營者에 支配되고 이러한 傾向은 獨逸에서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問題로서 所有者 支配와 다른 法的理念과는 전혀 無關係한 經營者의 支配權限이 어떻게 正當化 되는 것인가의 問題에 焦點을 맞추어 보면

1. 바-리, 민즈의 學說

經濟自由主義인 傳統的 私有財産制度下에서는 資本危險 支配, 利潤要求의 統一이라는 原則이 基本이지만, 所有와 支配가 分離한 現代의 大衆株式會社에서는, 資本危險과 支配와 別個의 集團(資本供給에 다른 危險을 負擔하는 株主와 資本을 支配하고 實際로 經營을 해나가는 經營者)에 屬한다 支配者로서는 經營者가 누구의 利益을 爲해서 支配하고 經營하고 있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누가 企業의 創出한 利潤을 얻는 것인가의 問題가 생긴다. 이를테면 바-리 민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³¹⁾ 株式·社債라고 하는 消極的 財産에 對한 支配와 責任을 放棄함에 따라 企業은 이러한 所有者를 爲하여 經營을 하고 支配者의 利益을 爲한 支配權限을 行使하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러한 事態를 法律的인 私유財産制度의 原則에 修正을 加해야 한다는 論議도 있지만 支配者로서 經營者의 企業支配나 經營의 誘因이라는 것이 自身の 利潤뿐만 아니라 社會를 爲해서도 쓸모있고 유용하다고 生覺한다.

이와같은 思惟에 依해서, 새로운 權限이 支配者를 爲해서 使用되는 要求權의 基礎는 되지

30) 前掲書, pp. 11~21

31) 前掲書, p. 435.

않지만納得할만한 正當性의 根據로서 行動이나 言動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支配者는 所有者 내지는 支配者로서의 넓은 集團의 權利에 對한 길은 열려 있다.

近代株式會社는 所有者나 經營者 뿐만 아니라 全會社에 對한 과업을 提供하게 된다. 大企業은 이따금씩 集團의 多樣한 請求權을 平準化하면서 私의 貧欲보다는 公의 政策의 立場에서 所得의 흐름이 一部分 割當되고 純粹한 中立的인 技術이 發達하게 된다. 바-리와 민즈는 企業은 所有者나 支配者의 利益때문에 支配 經營되는 것이 아니고 制度上 株式會社를 維持, 存續, 發展함과 同時에 企業을 둘러싼 利益集團의 利益의 調整을 企圖한다. 「社會的 責任」은 所有와 支配의 分離에서 생기며 여기서 支配者의 權限에 對한 正當性의 根據가 있다고 主張하게 되고 獨逸에서는 많이 流布되고 있는 것이다.

바-리, 민즈는 經營者의 利潤動機에 對하여 詳細하고 所有와 支配가 分離한 段階에서 證券 所有者가 利潤動機에 依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은 當然하지만 所有와 支配가 未完成인 경우에는 經營者는 利潤動機가 誘因으로서 多少作用하게 된다고 했다.

바-리, 민즈, 고-돈은 經營者行動과 利潤動機에 關하여 詳細하게 言及하지 않았지만 私的動機만으로는 經營者의 動機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³²⁾

私的利潤이 支配者의 目的이 될수 있겠지만 支配者는 다른 目的(이들테면 信仰, 權力, 또 專門的 熱意에 對한 滿足)이 있다고도 일단 生覺해야 한다고 했다.³³⁾ 그러나 여기 明確한 解答을 얻기 보다 支配者는 自己自身の 利益을 爲해 努力하는 地位³⁴⁾라는 것은 私的利潤이라는 들의 利益이 아니고 企業을 維持, 存續, 發展과 利益調整을 企圖하는 社會的 責任의 遂行이라는 自己나름대로의 「利益」을 追求한다고 쉽게 推測할수가 있다. 이들 主張의 內面에는 고-돈의 言及되로 「非金錢的인 動機」가 伏在되어 있다고 본다 利益의 調整이란 企業을 維持, 存續, 發展시키는 것과 無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들의 主張은 利益때문에 企業이 運營되지만 企業이 創出한 利潤을 收受하는데 있어 論議가 있으나 企業自體를 爲한 「利潤創出」은 依然히 否定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特히 銘記할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利益調整과 企業의 維持 存續 發展에는 密接한 關連이 있기 때문이다.

2. 고-돈의 學說

바-리, 민즈는 最大 200社 가운데 44%의 8½社가 經營者 支配라 하고 여기에 對하여 고-돈을 所有와 經營의 分離傾向을 認定하지만 經營者 支配의 比率은 最大 176社³⁵⁾ 가운데 33%³⁶⁾

32) 前掲書, p. 150

33) 前掲書, p. 150

34) 前掲書, p. 152.

35) 고-돈은 TNEC(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一臨時全國經濟委員會)의 모노구라프 NO29의 SEC의 調査對象 200社 가운데 他會社의 子會社라고 生覺되는 것은 除外하였으나 바-리, 민즈는 이를 認定했다.

36) 平井泰太郎 「ビジネスリーダーシップ」 東洋經濟 1954年, p 44

上林貞次郎 「現代企業における資本, 經營, 技術」(森山書店, 1958年)

라고 하고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證券取引委員會)은 200社 가운데 139社의 約 70%가 所有者 支配이고 經營者 支配는 30% 程度라고 推定했다.

고-돈은 바-리, 민즈의 所有分散의 傾向에 關해서 最大 176社를 占한 20人의 最大株主의 特殊比率을 分析한 結果 이들 大株主는 全體의 28.6%를 所有하고 特히 創造部門의 個人株主의 比率이 높다.(18%) 鐵道, 電氣, 가스 水道關係 比率이 높다(80%-90%)는 것을 例示하므로서³⁷⁾ 所有에 對한 消極的인 리-다싶으로서의 支配(經營者의 任免權)가 200社 가운데 118社의 59%로 되어 이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라는 SEC의 見解에 疑問을 갖이고 積極的인 리-다싶으로서의 支配(意思決定)과 所有가 맞물려 있는 比率은 相當히 낮다고 한다. 以上과 같이 고-돈과 바-리, 민즈의 見解差異는 實質的으로 少數支配所有가 存在함을 믿지만 그 「支配」가 現實的으로 實效性이 있는지는 疑問視된다고 보고 그 支配가 積極的 支配(상세히는 企業을 組織하고 指導하고 經營의 諸活動의 進路를 規程하는 諸決定, 廣範한 諸規程을 해나가는 意思決定)로서 實質的으로 經營者에게 移行되고있다. 그 根底에는 所有와 支配의 分離가 相當程度 進行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곧 -도는 企業의 리-다싶의 決定的인 調整(基本的인 目的의 設定, 各種의 下位의 決定을 基本的인 目的과 調整, 各種의 決定의 對立 衝突과 調整하는 事 等等)에 對한 組織의 創造와 維持된다고 한다³⁸⁾ 이 問題는 매우 重要한것으로 經營者의 動機와 關聯해서 考察해보면 이들 經營者가 누구의 利益을 爲하여 어떤 動機에 따라 리-더-십을 遂行하는가. 고-돈에 依하면 그 主張은 다음과 같다. 大企業의 經營者는 積極的 리-더-십과 消極的 리-더-십을 掌中(손안) 넣어므로서 強力한 權力을 갖게 되는것이다. 그들은 거의 株式을 所有치않으므로해서 充分한 俸給을 受取하므로서 株式所有에 對한 私的인 「利潤動機」는 減少된다.³⁹⁾

實質的인 支配者로서 있는 狀態에서 受領하는 金錢以外的 各種 有形 無形의 利益에서 行動하게 되고 多數의 群小 株主를 無視하게 되고 少數의 大株主도 容易하게 支配力을 行事할 機構가 없기 때문에(責任狀을 確保하는 機構가 完備치 않으므로) 이들은 部外者로 간주치 않고 다만 企業自體를 爲하여 經營하게 된다고 한다.⁴⁰⁾

그 結果 所有者로서의 株主의 利益은 社會的 制度 繼續事業으로서 「企業 그 自體」의 觀點에서 調整하게 되는 것이다. 經營者가 權力을 쥐고 있는것은 株式이라는 私有財産의 所有가 아니고 企業이 社會에서 占하는 地位에 由來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企業 그 自體의 維持 發展에 盡力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 經營者는 企業 그 自體의 維持, 存續, 發展을 前提로 해서 그 알맞는 關係 「權力獲得의 衝動 名聲欲 및 여기 關連하는 競爭의 衝動, 創造 衝動, 自己의 集團과 一體化하는 性向, 이에 關連한 集團에 對한 忠誠心 安全에 對한 갈망, 他人에게 對한 奉仕心」⁴¹⁾ 이와 같은 非金錢的인 動機로 하여 經營하

三戶公 「アメリカ經營思想批判」 未來社, 1973年, p. 75.

37) 前掲書, p. 39

38) 前掲書, p. 57.

39) 前掲書, p. 439

40) 前掲書, p. 333

41) 前掲書, p. 328.

게 되는 것이다.

現代 企業의 經營者는 法的 理念에 따라 먼저 첫째로 所有者의 利益을 爲하여 經營하는 義務가 있다고 하는 壓迫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利益을 統合할만한 社會的 利益을 基準으로 리더쉽을 行使하는 社會的 要請이나 規制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리더쉽의 行使가 「社會責任」의 遂行에 重要的 要因이 된다. 따라서 經營者는 目的 내지는 利益을 利益自 集團과 關連해서 調整하고 統合의인 目的과 利益을 設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對해서 고-돈은 「리더쉽에 對한 目的은 明確하게 하는 것은 混亂하게 하는 傾向이 있다」라고 目的에 關한 意見을 一致하고 繼續的인 責任을 지는 機構가 없다고 보고⁴²⁾ 大企業의 統一的이고 一貫된 目的도 없는 것이다⁴³⁾라고 고-돈은 主張한다. 그는 企業을 目的과 利益이 對立하는 하나의 政治的制度라고 理解해도 좋다고 生覺할뿐아니라 對立하는 利益을 調整하는 「合理的인 目的」의 設定이 問題라고 했다. 經營者는 動機가 私的 利潤이 아니라고 고-돈은 반복해 言及하고 經營者가 「利潤受取」에서 떠나있어도 결코 떠나 있다고 할 수 없다⁴⁴⁾ 바-리와 민즈의 경우에도 「企業 그 自體」의 維持, 存續, 發展은 經營者의 非金錢的 인센티브 充足에 따른 各種의 利益者集團의 利益調整에서는 企業의 利潤追求가 그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可能할만한 利潤이 確保되어 처음으로 經營者의 權限이 지켜 지게 되었지만 私的利潤의 受取를 인센티브로서 經營을 하는것이 아니고 「企業 그 自體」를 爲한 利潤創出이 廣義의 인센티브로 되어 있다고, 고-돈은 主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資本主義의 受容과 經營者 支配의 正當性

三戶 公教授는 일찍이 바-리 민즈의 批判을 다음과 같이 하고있다.⁴⁵⁾

점차 所有者가 그 所有物利用과 處分에 對하여는 本質的으로는 그 所有者이므로 그 變質 轉化한 株主權이 存在한다. 그 株主=所有者의 會社에 對한 權利가 消滅하지 않는 限 所有者의 會社支配는 적어도 形式的으로는 消滅하는것은 않으리라고 한다.

大株主는 經營支配에 關해서 意慾을 잃게되고 「所有와 支配의 分離」와 「所有와 支給의 結合」의 矛盾 小數支配라는 形態로서 所有의 分散이 進行되면 經營者支配라는 形態가 생겨나게되고 私有財産制度下에서 「所有와 支配의 結合」의 理論은 어떠하든지. 生産手段에 關한 所有가 株式의 分散에 따라 社會的 所有의 形態가 점차 發展되고 會社의 社會的 性格이 強해져가고, 資本主義 社會에서 財産所有의 重要的 部門에서 所有와 支配가 分離가 되어 實質的인 私有財産制度가 止揚될 수 있을지.

42) 前掲書, p 365

43) 前掲書, p. 367

44) 前掲書, p 335

45) 三戶 公 「アメリカ經營思想批判」, 前掲書, p 44

이러한 主張은 私有財産制度에 對한 바-리·민즈가 批判하는 一般的인 立場을 表明한 것이 라고 본다. 經營者支配論은 私有財産制度의 立法의 理念이나 形式的인 法的規程을 반드시 否定하지 않지만 大企業에서는 所有와 支配가 分離되고 實質的인 私有財産制度가 止揚되고 있는 現狀을 率直히 是認하는 立場에 있다.

여기서 支配者로서 經營者의 權限의 正當性이 問題가 되고 그 正當性은 經營者支配에서 問題가 되는 性質의 것은 아니다. 完全한 所有者支配(全株式所有支配)가 아닌 한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이것은 支配者 以外는 所有와 支配가 完全히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支配가 私有財産制度에 기인한 法的形態와 多數決이란 形式的인 民主主義의 形態가 不充分하지만 겨우 合法的이란 點에서 正當性을 갖지만 實質的으로 經營者支配의 경우와 같이 그 正當性이 社會 經濟的인 根據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資本主義에 있어서 經濟自由主義의 原則은 구텐베르크(E. Gutenberg)와 같이⁴⁶⁾ 「企業이 永續的으로 可能한限 最大의 利潤을 그 投下 資本에 따라 所得을 피하는 경우에 國民經濟的으로 最上의 財貨를 얻을 수 있게 되고 全體 經濟的인 自動現象이 發展되고 여기에 따라 國民經濟力이 나아져서 많은 社會的인 生産物이 生産되어 購買者의 欲求와 바람을 잘 適合하게 되고 全體 經濟的인 觀點에서 보면 究極的으로는 「企業者」의 權限의 正當性이 由來되게 되고, 私有財産制度의 法的規程은 그 理念을 具現했다고 하겠다.

이를 敷衍하면 資本主義의 「完全競爭」의 理念은 社會的인 利益을 調整하고, 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하게 된다.

全體經濟的인 觀點에서 社會的인 責任은 自動的으로 부과된다. 所有와 支配의 分離에서는 本來的인 支配者인 所有者로 부터 「實質的인 支配者」와 「形式的인 支配者」의 人格的인 分離에 따른 兩者의 機能·權限이 問題가 되지만 오늘날 社會的인 利益의 達成이라는 經濟自由主義의 現代的인 具體化와 內實化가 다시 생각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바-리·민즈와 고-돈도 究極的으로 「利益調整」이라고 하는 「社會的인 責任」을 다하게 하고 所有者의 「私的인 利潤追求」가 經濟的·社會的인 福祉에 寄與한다고 하나 自由經濟가 資本主義의 理念이고 「完全競爭」의 假想的인 狀態에서 乖離되고, 經營者는 私的인 利潤追求를 客觀的으로나 主觀的으로 企業經營의 動機로 되지 않게 된다. 以上과 같은 事實을 理論化 함으로서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의 一端을 根據 지을 수 있을 것으로 生覺된다.

바-리·민즈는 私有財産制度和 그 利潤의 關係에 對하여 自己의 富에만 골몰하고 支配에만 熱中하는 所有者는 그 富에서 派生되는 여러利益을 全部受取하여도 保護되는데 하물며 自己의 富의 支配를 放棄한 所有者는 마땅히 保護되어야 않겠는가. 그 放棄가 所有者의 富에 關係한 本質的인 變化라는 것은 마치 그 富에 對한 利害關係에 適用되는 論理를 바꾸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⁴⁷⁾ 疑問을 提起했다. 私有財産制度의 傳統的인 論理를 否定하면서 私有財産을 基礎로한 利潤追求를 疑問視할 뿐으로 明確하게 言及치 않았지만 論述의 行間에서 推測되기는 「企業 그 自體」의 利潤追求를 決코 否定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重要한 要素로

46) 清口雄 「經營經濟學原理」, 第一卷·生産編 千倉書院 1957年

47) 前掲書 p. 429.

되어 있다고도 生覺했다.

여기서 經營者는 富의 支配를 放棄한 所有者의 利益을 爲하여 經營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企業의 利益者 集團을 爲해 經營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結論하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結論의 根據는 「法律 그 自體에서 찾을 수는 없고 法律의 經濟社會의 背景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라고 バリ-민즈는 言及하고 있다.

여기 對하여 고-돈은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⁴⁸⁾

所有와 分離의 支配에 依하여 社會는 經營者가 여기에 對하여 利己적이고 同時에 自己特性的이며 獻身을 設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의 生活體로서 흔치 않는 일이 되고, 大體로 이름없는 株主들에 努力보다는 會社 그 自體 때문에 努力하게 된다. 經營者는 株主를 가끔 部外者로 生覺하는 傾向이 있다. 配當은 所有者와 別個의 存在이며 繼續的 制度로서 그 企業 自體의 觀點에서 보아서 最善이라 生覺되도록 一致시켜 나가야 한다

利潤은 企業에 있어서 基本的 基準이므로 必要的 經濟的 職能을 果하는 인센티브이기도 하다. 簡單히 말하면 大企業에서는 利潤動機는 새로운 樣相으로 나타나게 된다. 企業의 리-다습의 目標는 利潤創出이고 決코 利潤收受가 아니다.

以上에서 밝혀지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利潤追求는 決코 放棄할 수는 없고 利潤追求의 目的과 方法 및 利潤分配에 變化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資本主義에 變客이 생기지 않는限 本質的으로 어떤 變化도 없을 것이다.

利潤追求라는 點에 있어서 所有者支配企業과 經營者支配企業의 明確한 對照는 없고 經營者支配 企業에서는 利潤追求가 稀薄해지고 社會에 對한 奉仕機關으로서의 性格이 濃厚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은 생각에 對해서 獨逸에서는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슈타이만은 調査結果 經營者支配 企業은 經濟的 行爲의 特質이나 깊은 意味에서 그 行動樣式에서도 所有者支配 企業부터 乖離되어 있지 않음이 確認되고 經營者 支配企業은 所有者支配 企業以上으로 利潤志向的이 있다⁴⁹⁾라고 한다.

따라서 利潤追求의 稀薄化=利益者集團의 福祉라는 公式이 아니고 利潤追求(企業 그 自體를 爲한)=利益者集團의 福祉라는 公式이 成立한다.

企業의 利潤追求와 利益者 集團의 福祉는 利益調整이라는 高次元의 水準에서 統合된다고 한다.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은 所有와 支配가 分離된 現在에서는 經營者가 所有者의 行爲와 一致하는 行爲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經濟自由主義的인 理想像을 향하여 經濟構造를 逆發展시킬 수 없는 것이다.

所有와 支配의 分離라는 現狀을 是認하고 그위에 「理想像」에 近接할 만큼 「利益調整」을 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基盤을 方法論的, 制度的으로 確立함으로써 提議를 만들 수 있다고 言及한다. 이에 對하여 獨逸에서는 우리들과 다른 觀點에서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

48) 前掲書 p. 333

49) 前掲書 p. 552

의 根據에 對하여 問題로 하는 立場이 있다. 그 한사람이 포서나(R.A.Posner)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支配權限의 正當性은 「立法者가 企業의 所有者에게 認定되는 權威는 所有와 支配의 統一에 따라 全體 經濟的 配分의 最適化가 保證된다고 表現되는 古典的, 自由主義的인 根據에 따른 것이다

現代 企業社會에 있어서 所有와 支配의 分離는 株式의 高度分散 株式의 大象化를 基盤으로 資源配分상 매우 效率的이 되고 있어 이런 點에서는 正當性의 問題가 없고 「分離」의 正當性은 支配의 自體를 決코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所有者가 放棄한 支配權限을 行使하는 經營者가 누구에 依하여 무엇을 正當化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다.

以上的 포서나 등의 主張에 앞서 피고-미헤-리스(A.Picot und E. Michaelis)의 學說이 있다.

그는 所有權 理論에 敷衍해서 自由意思와 契約을 基礎로 한 處分權 理論의 立場에서 후아-마=젠슨(E.F.Fama and M.C Jensen) 및 헷센(R. Hessen)이란 美國學者의 學說을 授用하고 正當性의 問題를 解決코져 했다.⁵⁰⁾

여기서 資源에 關한 處分權의 委讓이란 意味의 權限委讓은 原則적으로 撤回可能할 때 한한다. 슈타이만에 依하면⁵¹⁾ 撤回는 可能하다고 하고 이러한 企業의 內部關係에 있어서는 權限을 合法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讓渡한다고 하는 自由意思는 다른 사람들이 그 株式을 購入케 하는 것이다. 結局 資本提供의 契約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 해도 權限 移讓은 撤回不可能이므로 實質적으로 存在할 수가 없다. 이것은 企業의 內部關係를 外部關係로 바꾸는 것이고 結局 論理的인 論證水俵을 變更함에 따라 그것이 立證되게 하는 것이다. 現在로서는 內部構造의 으로보면 權限委讓은 撤回되지 않는 狀態에 있다.

다음으로 「市場에 依한 統制」의 根底에는 經營者의 自由裁量에 맡겨진 行爲範圍는 窮極的으로는 無視할만치 적다. 이러한 生覺은 「完全競爭」의 경우를 前提로한 主張이 있다.

「完全競爭」은 理論的인 極端的인 假想으로서 現存하지는 않는다 實際적으로 立證 不可能인 것이다. 왜 支配權限이 經營者에게 있고 무슨 根據로서 그 正當性이 認定되는지에 對한 根源的인 問題의 解決이라는 것에 對하여 論議해볼 必要性이 생기게 된다.⁵²⁾

피고-미헤-리스는 「方法論的 個人主義」라는 立場에서 企業論理制度에 關한 歪曲된 生覺은 「主觀的인 利益極大化를 志向하는 個人이라는 패러다임(Paradigm)에 놓여 있다고」한다.⁵³⁾

所有와 支配가 分離되어 있는 現在로서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規範⁵⁴⁾이 없으면 이와같은 倫理的 規範을 確立할 必要했을 것이다. 各種의 利益을 調整하고 政治的 컨센서스를 얻는것과 같은 經營者의 行爲와 契約行爲에 關해서 戰略的 考慮를 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現在로서는 法的으로 公有財産制度가 基礎가 되어 形式的으로 企業은 利益者 集團이 서로

50) 슈타이만 등은 Aufsatz III에서 그 批判에 回答하고 再批判하고 있다.

51) 前掲書 p. 277

52) 前掲書, p. 278

53) 前掲書, p. 279

54) 前掲書, p. 279

가 利益極大化를 志向하는 雙務契約으로 完全競爭을 基本的으로 實行하므로 現實的으로 完全競爭을 前提할수가 없기 때문에 統合的인 相互의 利益極大化를 實現키 爲하여는 現實에 存在하는 한가지 事實로 된 狀況을 그대로 無批判的으로 前提할수 없고, 各種의 利益을 調整, 統合할수 없는 堂派性에 빠지기 쉽다. 이를 回避하려면 事實 是認과 批判을 通하여 하나의 規範을 理念的으로 構成하는것 外 別 道理가 없다고 본다. 이 方法은 構成主義 哲學·科學理論에서 말하는 「超主觀的·超個人的 對話」(理性的 對話)⁵⁵이다. 그 方法에 따라 雙務契約, 個人的契約 내지 交換契約이라 하고 交換科程의 圓滑한 遂行에 不可缺한 規範이 그 效力을 갖게 된다.

1. 株式會社에서의 共同決定

經營者の 支配權限의 正當性은 利益集團의 利益調整에 비롯되는 것이다. 獨逸에서의 共同決定(1976年の 共同決定法에 따라)은 그 利益調整이 어느 程度 나타나게 되고 이것으로 共同決定의 可能性이 所有 形態의 모양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問題로서 檢討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슈타이만의 學說을 中心으로 考察해보면 共同決定의 可能性은 法的規制보다 定款이나 業務規則에서 法의 內容을 어떻게 效果的으로 充實하게 할수있는가에 따라 左右되고 共同決定法에 依하여 맡겨진 自由裁量이 所有形態의 變化에 따라 活用되는가에 對한 問題가 있다.

IV. 會社支配論의 新展開

株式會社の 支配者와 그 支配樣式을 分明히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論爭의 테-마로 되고 있다. 그 論爭의 크다란 潮流는 「所有와 支配의 分離」 위에서 經營者에 依한 會社支配가 成立되고 있다고 主張하는 經營者 支配論인 것이다.⁵⁶

그런데 經營者 支配 그 自體의 概念이 반드시 一致한 것이 아니고 支配概念 自體에도 微妙한 狀況이 있다. 會社間 關係의 視角에서 「經營者支配」를 根本的으로 批判하고 會社支配論의 現代的인 再構築을 企圖하는 스코-드(Scott, J.)의 理論을 「經營者 支配」의 論理的 짜임새와 對比하면서 檢討하고자 한다.⁵⁷

經營者가 社會를 支配한다고 하는 主張은 하나의 理論的인 潮流이지만 會社를 어떻게 「支配」할것인가의 論理에는 두가지 觀點이 있다. 첫째는 株式分散에 比重을 둔 經營者 支配論으로 이에 對한 先驅이며 典型인 바-리 민즈(Berle, A.A. and Means, G.C.)의 基本的인 命題는

55) 鈴木辰治 「經營經濟學의 理論과 歷史」 文眞堂, 1987年 p. 339 對話에서 先入見을 갖지 않고 非說得的으로 非強制的으로 進行시키고 여기서 諸 概念이 對話 參加者에게 一義的으로 理解되도록 術語區分, 言語共通性의 使用規程, 對話의 根據를 明示하도록 一般的인 命題로 言及하고 全對話 參加者를 受容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

56) 仲田正機, 「利益星座狀連關による 支配論의 構造」 關下總編, 1989年.

57) 仲田正機, 「現代金融資本의 諸理論」, 同文館, 1989年

다음과 같다. 株式會社의 名目的 所有와 會社 資産에 對한 實效的 支配와의 分離에 있어서 統一的인 財産額을 分解하고 一般의 株主들의 關心이 會社資産의 支配로부터 配當 取得에 더욱 마음이 쏠리게 됨으로서 權力的 空白이 생기고 任員會와 經營執行 幹部에게 實效的 權력이 附與될 可能性이 있게 되는 것이다.

바-리 민즈는 「任員을 選出하는 權限을 實際로 갖인 사람들이 支配者임을 規定하고, 株式이 極度로 分散되면 經營者가 自己의 永續的인 任命이라는 意味에서 「經營者 支配」을 主張하게 된다. 따라서 經營者 支配가 成立하는 最大의 포인트는 株式의 分散이다. 여기에 따라 생겨나는 支配力の 分散이다. 이것은 매우 一般的인 「經營者 支配」의 規程이라고 하는 바-리-민즈 以來 라-나(Lerner, R.J)도 이러한 生覺을 繼承하고 있다.

또한 最高經營者의 任命力이 아니라 會社에서 일어나는 決定的으로 重要한 經營政策을 決定하는 힘을 갖는 支配를 主張하기도 한다. 이것은 現實的으로 政策決定과 人事를 統合하는 問題인 것이고 社會의 最高政策을 最終的으로 可能하게 하는 條件으로서 經營者의 任命力이 있다고 보면 그 區別 自體는 그렇게 重要한 것은 아니다. 다만 「經營者 支配의 內容으로서 經營政策의 意思決定能力을 重視하는 視角은 株式分散의 詳細한 分析을 基礎로해서 歸納法的인 支配主權로서 經營者를 導出코자 하는 論理와는 사뭇 다른 類型의 經營者 支配」理論이라 生覺된다 즉 經營管理 職能의 觀點에서 重要한 意思決定項目이나 人事案件에 對해서 經營者가 發揮하는 리더쉽이나 專門技能을 重視하고 여기서 所有者 代身으로 새로운 能動的인 「經營者 支配」를 主張하는 理論이 있다. 勿論 이와같은 理論을 主張하는 者도 株式分散이 「經營者 支配」의 成立에 있어서 重要한 契機가 된다고 認定되지만 어디까지나 力點은 經營者의 意思決定에 있다.

다시말하면 「組織論」的인 經營者 支配論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같은 理論을 代表하는 사람이 고-돈(Gordon, R. A)이나 갈브레이스(Galbraith J.K)를 열거할수 있다.⁵⁸⁾

現代의 株式會社가 經營者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다고 하는 主張은 理事會의 人事를 포함한 重要한 政策을 決定하는 實際的인 힘을 支配하는 內容으로 把握하고 이것이 흔히 內部昇進型의 執行 任員들에게 歸屬한다고 強調하는 點에서는 유사하다고 보겠다. 이상의 두가지의 經營者 支配論에서 支配概念의 基本에 있어서 別달리 論理가 없지만 暗默의 前提가 混在해 있다. 이를 明確하게 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支配論理에 對하여 그 核心이 되는 命題를 整理해 보면, 먼저 「株式分散」에 무게를 두면 經營者 支配를 說明하는 理論은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命題로서 構成된다고 본다.

- (1) 支配는 原則으로 株式所有에 付隨하는 議決權에 따른다.
- (2) 株式分散이 進行하면 單獨으로 議決權을 장악하고 所有者가 不在
- (3) 支配가 所有로 부터 分離되어 經營者가 支配의 主權가 된다.

58) 「經營支配論」의 支配概念에 對하여는 다른 「支配와 影響」이나 「潛在的 顯在的」같은 區別을 導入한 多樣한 論議가 있다.

村田揆, 「經營者 支配論」, 東洋經濟新聞社, 1972年

仲田正機, 「現代企業救助と管理機能」, 中央經濟社, 1983年

支配의 源泉으로서의 株式所有의 分散은 支配力의 分散내지 支配와 所有의 「離婚」이 되는 것이다.

여기 對하여 「組織論」的인 經營者의 힘에 무게를 두면 「經營者 支配」를 說明하는 理論은 支配를 所有構造에 規程된 關係로 포착하는 것보다 經營管理 職能으로서 또한 能動的인 비지니스 리더쉽의 行使라는 觀點에서 重視하고 있는 것이다. 基本이 되는 命題는

- (1) 支配는 組織의 意思決定에 直接 參與하는 能力의 問題이다.
- (2) 經營者는 所有者와 別個의 獨立한 利害를 갖인 社會的 範疇임
- (3) 現實의 意思決定에 參與하는 經營者가 支配主體가 된다.

이러한 內容은 「株式分散」論的인 理解와 比較해서 支配內容 그 自體 把握이 다르다기 보다 支配가 最終的으로 어떤 힘에 依해서 根據되는지를 認識하게 되고 經營者는 獨立한 利害를 갖는 社會階層이며 리더쉽을 發揮하는 支配主體가 되는 것이다.

V. 株式會社의 所有와 支配

스코-드의 「所有와 支配」分析에 對한 姿幣와 方法은 株式分散에 무게를 놓고 「經營者 支配」論과 共通이지만 「所有가 法的 關係에 있음에 對하여 支配와의 構造上의 關係에 있어 特定의 範疇」의 所有者가 株式會社 自體에 委任한 權力을 動員하는 事實上的 能力을 갖는 것이다」原則的으로는 바-라와 민즈의 理論에 귀를 함께 하는 것이다⁶⁰⁾

「經營者 支配」論은 資產의 「所有」와 그 資產을 「使用」하는 能力을 株式會社에 依해 最終的으로 分離된다고 結論지우침에 對하여 스코-드는 會社의 社會的, 經濟的 活動 가운데 「事實上」再統一된다고 生覺한다. 支配는 「株式의 所有構造에 依據하여 窮極的으로는 株式所有에 付隨하는 諸權利에 根着하는 것」으로서 把握된다.⁶¹⁾

어떤 會社의 코포레트 파-워를 生覺해보면

그 背景에 있는 會社關係에 留意하면서 一定의 範圍의 會社를 全體로서 分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客觀的인 狀況이 생기면 그 意味에서 자이트린(Zeitlin, M)이 指摘한 바와 같다.

1. 株式所有의 會社間 네트워크

이와같이 「所有와 支配」의 理論에 따라 現代의 代表的인 株式會社의 支配構造를 分析하면 어떠한 全體像이 떠오르는지를 英國을 對象으로 한 스코-드의 研究成果를 要約하면⁶²⁾

여기서 對象이 되는 上位 250社(1976年)은 別表 8) 타임스 1000社(Times 1000)로 부터 總責上高에서 본 200 非金融會社와 50 金融會社를 리스트 얹 한 것이다.

60) 스코-트(Scott J) 「會社 支配者」 立敎經濟學研究 第42卷 2號 1988年 p 158

61) 上掲書, p. 159

62) 以下の 內容은 스코-드 「現代企業의 所有와 支配」第4~7章에 記述되어 있다.

(List up)
 (別表 8) 英國大會社의 支配樣式(1976年)
 支配者의 類型
 會 社

支配樣式	個人	英國	外國	混成	國歌	混成	基地	計
公 法 人	-	-	-	-	13	-	-	13
完 全 所 有	7	1	28	0	2	0	0	38
過 半 數	15	2	9	0	2	0	0	28
共 同 的 過 半 數	0	7	1	3	0	1	0	12
安 定 的 小 數	13	9	3	0	1	3	0	29
限 定 的 小 數	11	4	2	0	0	1	0	18
共 同 的 小 數	0	2	0	0	0	2	0	4
相 反 的	-	-	-	-	-	-	8	8
利 益 星 座 連 關	-	-	-	-	-	100	-	100
合 計	46	25	43	3	18	107	8	250

資料 · Scott, J. Capitalist property and Financial power. p. 64.

英國에서는 「經營者支配」의 狀況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單一支配株主가 存在치 않는 利益星座狀聯關을 通해서 支配되는 것이 全體의 40%가 된다고 한다. 그의 支配樣式에 屬하는 會社는 非金融會社 84社와 金融會社 16社로서 合計 100社에 이른다. 支配者의 類型을 보면 71社의 法人 支配 64社의 個人支配 18社의 國歌支配 그리고 8社의 相互의 支配에 對하여는 混成된 利害者에 依한 支配가 107社가 된다. 그 中에서 100社의 支配는 利益星座狀連關을 通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公法人과 完全所有 過半數, 安定小數로 分類된 會社가 108社가 된다. 이것은 全體 40%를 上回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을 미루어 보면 現代株式會社가 所有權益에서 自立化한 經營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다는 兆候는 어디에도 어림잡을 수 없다.

所有者에 依한 支配가 普遍的이지만 그 形態는 單一의 權益者에 依한 支配에서 株主集團의 協助 내시는 對抗關係에서 생겨나는 連合을 通한 支配로 다시말하면 個人的 支配(Personal Control)에서 非個人的 占有(impersonal possession)의 諸形態로 移行하고 있는것이 現代的인 趨勢로 되고 있다. 個人的 支配에서 會社는 勿論 存在하지만 이것은 서서히 非個人的 占有의 構造와 調和하고 어쨌던 그 構造는 從屬되는 方向으로 結論지워지게 될 것이다.⁶³⁾

2. 株式會社의 所有와 支配

株式會社에 있어서 經營者의 權限에 對하여는 바-라, 민즈(A.A Berle and G.C Means)에

63) 이와같이 英國과 같은 樣相이 美國이나 日本에서도 確認되고 있고 스코-드는 非個人的 占有라는 觀點에서는 歷史的 傾向의 共通성과 함께 相違點도 있다고 보았다. 會社關係의 觀用에서 株式所有 分析은 스코-드로 부터 展開되고 네트워드의 階層的인 構造를 精密한 모델化의 手法을 驅使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分析에서는 相對的으로 少數의 大投資家가 資本調達에서 헤게모니를 行使하는 位置에 있다고 하고 金融 헤게모니(financial hegemony)라고 稱하는 構造가 存在해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

依하면 「近代株式會社와 私有財産」의 發表以來 그들의 分析方法에 依據해서 經營者 支配論이 展開되고 會社의 發展에 따라 經營者 支配가 一般한다고 主張하고⁶⁴⁾ 그들은 지금부터 株式所有의 分散과 支配力, 經營者의 任免權의 分散을 초래한다고 把握하고 있다. 바-라, 민즈는 會社 支配 가운데 少數者 支配나 經營者 支配의 源泉을 株式의 分散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株式分散에 對應해서 株式所有者 代身으로 經營者가 會社에 있어 實質的 權力을 行使하는 位置에 있다고 說明하게 된다.

株式會社가 經營者에 依하여 支配되는 見解가 많지만 個別會社의 株式所有 構造만으로 會社間의 資本的 關係를 다루기는 쉽지않다. 왜냐하면 株式所有의 高度의 分散과 個別會社의 經營者支配가 서로 對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最高經營者에 依한 經營政策에 비추어 볼때 經營者支配라고 主張되는 것이 그 代表的 論議者가 고-돈(R.A.Gordon)과 갈브레이스(J.K.Galbraith)이다.⁶⁵⁾ 고-돈은 會社의 經營擔當者가 오늘날 會社의 비지니스, 리-다십 行使의 主된 責任을 지고 있다고 하고 리-다십과 所有하는 各已 다르다고 했다.⁶⁶⁾ 이러한 見解는 經營者 機能을 株式所有 構造로 부터 別途로 把握하고 이는 個別會社에서 組織的인 經營者의 管理職能에 焦點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會社支配의 權限이 株式會社에서 實質的인 意思決定者 卽 經營者의 비지니스-리-다십 있다고 했다.

現代의 巨大會社는 多様な 會社關係를 通하여 活動하고 있으며 이런 點에 留意해보면 會社支配도 個別會社의 틀에서 벗어나 會社間 네트워크의 觀點과 자이트린(M.Zeitlin)이 指摘한 바와 같이 그 自體가 포함되어 있는것처럼 複雜한 構造를 갖인 會社間 네트워크에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⁶⁷⁾

會社間 네트워크의 觀點과 方法을 導入함에 따라 會社 支配論은 再檢討 하지 않게 되고 從來의 經營者 支配論에서 株式의 分散이 進行되고 經營者 支配가 成立되면 會社支配의 主體로 부터 株主가 排除되고 만다. 株式所有의 會社間 네트워크 分析의 觀點에서는 이와같은 株主가 會社間의 共通利害에 따라 一定한 連合을 形成할 경우 株主들은 星座모양의 利害結果로 少數支配가 確立되게 된다. 이렇게 株主連合이 發生되면 個別會社의 戰略에 制約을 주게 된다.⁶⁸⁾

여기서 會社支配와 會社의 戰略決定의 關連되어 있는 點에 對하여 스코트(J. Scott)는 會社支配와 會社統治(Corporate rule)를 區別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는 支配와 特定の 株主(連合)에 所有機能을 부여하는 構造的 關係에 있다. 支配者는 會社業務에 對한 議決權의 行使나

64) Adolf A Berle and Gardiner C. Means,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Macmillan, 1932 「北原忠男譯」 「株式會社와 私有財産」 文雅堂銀行研究所 1957.

65) Robert A Gordon, *Business Leadership*, Brookling Institution 1948 森野夫譯 「ビジネス, 리더-シップ」 東洋經濟新報社, 1954年

66) 同上揭書, p. 49

67) Maurice Zeitlin "Corporate Ownership - The Large Corporation and the Capitalist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9, No 5 1974, pp. 1097~1099

68) John Scott, *Capitalist property and Financial Power*, Wheatsheay 1986, pp 121~122 現代企業研究 グレブ譯 「現代企業の所有と支配」 稅務經理協會 1988年 p. 131

株主總合에서 理事會의 構成을 決定한다. 한편 스코트는 支配構造에 따라 制約되는 意思決定權의 行使를 「統治」로서의 表現되고 있다.⁶⁹⁾ 그에 依하면 「通治」란 會社에 있어서 事實上的 意思決定權의 行使를 意味하는 것이다. 事實上, 會社通治者와 支配者와 非支配者로 構成되고 支配構造에 따른 制約의 範圍內에서 意思決定權 行使의 統治集團으로 따르게 된다.⁷⁰⁾ 이와같이 스코트가 말하는 會社統治는 具體적으로 最高 經營者 機能을 意味한다.

홀덴(P.E.Holden)에 依하면 最高經營者는 受託 管理層과 全般 管理層으로 되고 受託管理層인 理事會는 株主의 利益保護, 企業經營의 基本方策과 重要決定 같은 決定에 따르게 된다.⁷¹⁾

最高經營者 理事會 職能은 企業의 基本方策과 全般目標을 決定하는 것이다. 여기서 經營戰略의 決定은 受託者 機能, 企業目的의 決定 오피스(officer)의 任命과 解任, 計劃의 設定과 그 業績評價 豫算의 認可 長期安定性的의 確保, 買受合併같은 決定이 포함된다.⁷²⁾

3. 所有와 經營의 分離

企業數에서 絶對 多數를 占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個人企業이고 會社이고 個人이나 同家族이 大株主이므로 經營의 實權을 장악하고 있음은 所有와 經營이 未分離하고 있음이 一般의 임을 알 수가 있다. 企業을 支配하는 所有經營者가 中小企業이 많은데 反하여 企業數는 적지만 韓國經濟의 主導的 役割을 한 大企業에서는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進行되고 있다.

現在의 大企業의 經營形態는 大多數가 株式會社이며 여기서 經營權은 形成上은 株主이지만 實貨上은 專門經營人의 손으로 넘어가고 株式會社의 最高機關은 株主總會 理事會이고 株式總會는 株主에 依해서 構成되는 最高議決機關이며 ① 定款의 變更 ② 會社의 解散, 合併, 讓渡 ③ 理事와 監査役의 選任, 解任 ④ 決算 利益配當의 承認 등은 定期總會에서 議決된다. 이와같이 最高議決 機關이지만 株式이 分散保有되므로 결국 株主는 株式配當이나 株式에 關心을 갖게 되고 株主總會는 形式化하는 傾向이 있다. 여기에 對해서 業務執行上의 最高機關으로서 理事會가 事實上的 經營權을 갖게 되고 任員은 株主總會에서 選任 解任되므로 形式上 이의 所有者인 株主의 代理人에 不過하다.

이와같이 오늘날 大企業에서는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進行됨으로서 企業의 事實上的 支配權은 株主에서 經營者에게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해도 누가 所有者인지는 결코 無視할 수가 없다. 1985年度의 上揭會社의 所有者別 株式分布를 보면 株主數는 個人이 96%로서의 多數를 占하지만 그 保有 株式數는 25%에 不過하고 나머지 株式은 金融機關을 中心으로 한 機關 投

69) ジョン・スコット 仲田正機 「企業と管理の國際比較」, 中央經濟社 1993年 p. 5

70) John Scott "Entrepreneurial Capital in Japan and Britain" 「立命館經營學」 第27卷 第2號, 1988年 7月 p. 34

71) Paul E. Holden, Lousbury S. Fish, and Hubert L. Smith Top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ontrol, McGraw-Hill 1948, pp. 15~18(岸上英吉譯) 「トップ・スネジメソト」, ダトセモソド社 1951 p. 19

72) Harold Koontz, The Board of Directors and Effective Management, McGraw-Hill, 1966 p. 24 求島敏識譯 「取帝役會」, 東洋經濟新聞社, 1971年 p. 38

資家に 依해서 保有되고 있다.

會社가 누구의 所有인지에 對하여 日經 리써치가 實施한 社長에 對한 앙케이드 調査에 依하면

問：企業經營을 할 경우 가장 重要한 것은 다음과 같다.⁷³⁾

株 主	11.5%
從 業 員	11.5%
消 費 者	35.5%
企業의 利潤	20.4%
地 域 住 民	0.09%

問：社長으로서 勢力의 支持를 얻기 爲해 重要視되는것은

任 員	18.4%
從 業 員	63.2%
株 主	11.5%
主 要 去 來 先	0.03%
主 要 去 來 銀 行	0.03%
其 他	

VI. 結 論

所有와 支配의 分離는 歷史的이며 客觀的 事實이다. 따라서 所有者가 占하던 地位위에 經營者의 權限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壓倒的으로 強大한 것이다.

이 權限은 所有財產制度를 基礎로 한 現代法에 따른 것으로 所有者와 똑같이 正當性을 갖을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所有와 支配의 分離라는 事實을 솔직히 認定하고 私有財產制度에 따라서 經營者 支配를 否定하고 間接的인 所有者의 支配權限을 擁護하는 것에 따라 不當하게 正當性의 問題를 回避하는 主張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分離」의 事實을 實情的으로 率直히 認定하는 것이다. 經營者의 權限의 正當性을 問題로서 解決코저 企圖하는것은 企業을 둘러싼 利益者集團의 利益調整에 기인하는 것이다. 私有財產制度의 基調가 있는 個人의 利益極大化의 現狀 批判의 위에서 理論的으로 再構成하고 全體狀況으로 보아서 合理的인 規範을 設定하는 것에 따라 解決코저 한다.

問題解決의 단서는 「事象의 現存在」를 그대로 確定하고 現狀을 批判하는 것에 따라 이것을 超越한 理論的 規範을 設定하므로써 經營者의 支配權限의 正當性을 實現的 根據를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規範은 多分히 倫理的 色彩가 濃厚한 것은 當然한 것이다.

그 方法論은 構成主義哲學 科學理論을 基礎로 한것이고 또 바나드(C.I.Barnard)의 「受容의 理論」을 補完的으로 援用하는 것이다.

73) 日本經濟新聞社 編「會社は誰のものか」日本經濟新聞社 1987年 p. 95

마르크스의 主張은 雇用主들이 少數의 手に 財産을 集中시켰다고 한다. 그것은 簡單히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이 事實은 共產主義를 뿌리로부터 淸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數많은 작은 企業들이 한사람 또는 少數의 手に 支配되고 있으나 大企業의 所有權은 株式으로 分散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手に 있기 때문이다. 제네랄 모터스의 所有權은 43萬名의 사람들의 手に 있고 제네랄 일렉트릭 會社는 24萬名의 사람들의 手に 그리고 美國 電話 電送會社(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會社는 80萬名의 手に 그 所有權이 있고 그 中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인 것이다. 또 그 所有權은 機能이 分化되어 各己 相異한 사람들에게 歸屬되어 있는 것이다.